

## ○○○초 병설유치원 원아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원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23가소○○○○○○○ [1심]	사건유형	손해배상(기)
원고	○○○	피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외 2명
판결선고일	[1심]2024. 4. 3. 원고패	비고	
사건개요	<p>○ 원고와 소외 ☆☆☆는 ○○○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아이고, 피고 1, 2는 소외 ☆☆☆의 부모임. 원고는 2023. 3. 24. 오전 10:20경 간식을 먹기 전 손을 씻기 위해 단체로 화장실에 가던 중, 화장실 앞 복도에서 소외 ☆☆☆를 향해 장풍을 쏘는 시늉을 하며 손을 뻗었고, 이에 소외 ☆☆☆가 원고의 복부를 발로 차 그 충격으로 뒤에 있던 물체와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(복벽 타박상, 요추 및 골반의 상세불명의 부분 염좌 등)를 입었음.</p> <p>○ 소외 ◇◇◇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담임교사로 원생들을 보호·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, 간식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단체로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지시하였고, 사건 발생 직후 원고가 소외 ☆☆☆에게 장난을 친 점을 지적하며 사과하도록 하여 원고가 소외 ☆☆☆의 폭력행위를 말할 수 없게 되었음. 이 사건 유치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, 교감, 담임교사, 목격자인 □□선생님을 만나 대화를 하였으나,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설명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책임을 감추려고만 하였음.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유치원을 설립·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소외 ◇◇◇의 보호·감독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함.</p>		
주 문	<p>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</p>		
판결이유	<p>○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.</p>		